#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

2024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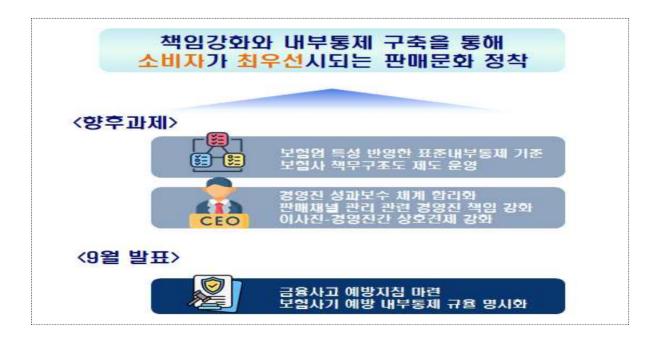
관계기관 합동

## 순 서

I. 추진배경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II. 주요내용2
1.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2
2.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규율 명시화 4
III. 향후 추진계획6

## I. 추진배경

- □ 광범위한 내부통제 규제에도, 대규모 금융사고가 매년 반복되며 내부통제 강화방안 지속 추진 중
  -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**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구분**하고,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\* 제도 도입
    - \* 보험회사는 '25.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의무 적용
- □ 보험산업은 금융사고\* 발생이 타 업권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, 보험설계사, 보험사기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들이 지속 발생 \* '18년 이후 금융사고 연평균 14.5건, 88.5억원 발생(금감원)
  -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운영위험(GA, 플랫폼 등) 확대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가 중요
  - 특히, IFRS17 도입으로 **단기성과주의식 과당경쟁**이 격화되면서 **보험사 내부통제**가 취약하다는 비판 상존
  - → 이에,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추진
  - 가장 기본적인 **금융사고 예방지침과 보험사기** 관련 **법제화 과제**부터 **단계적**으로 **제도개선**(→3차 개혁회의 발표과제)



## Ⅱ. 주요내용

## 1.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

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, 예방 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 제정

## 【 현황 및 문제점】

- □ 보험업권도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\*하고 있지만, 타업권(은행, 여전업)과는 달리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부재한 상황
  - \* 추이(억원, 건): **'19.** 284(27) → **'20.** 149(27) → **'21.** 30(22) → **'22.** 16(11) → **'23.** 37(14)
- □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**보험업권 특성**에 맞는 **지침 제정**\* 추진
  - \* 감사·준법감시인 간담회('23.11월), 내부통제워크숍('23.12월), 보험개혁회의 실무반('24.상)

#### 【 개선방안 】

- □ 금융사고 취약직무에 대한 통제 강화
  - (순환근무/명령휴가) 고위험업무\* 담당직원은 장기간 연속근무를 금지(5년 초과)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(연 1회 이상) 실시 \* 소비자와 금전거래, 자산운용,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금융사고 위험 높은 업무
  - (직무분리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·부서가 참여하게 하고, 직무분리 운영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
- ② 보험회사 내부통제 역량 제고
  - (준법감시 인력) 준법감시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(임직원의 1% 이상\*)
    \* 즉시 인력충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, 경과규정 마련(0.6%['25] → 0.8%['26] → 1.0%['27])
  - (준법감시 전문성 제고) 준법감시인 선임요건(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)
    명시 및 준법감시 전문인력\* 확충(준법감시 직원의 50% 이상)
    - \* ①자격증 보유자, ②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, ③관련 업무경력 5년 이상

- ③ 투명한 자금집행을 위한 견제장치 마련
  - (PF대출 관리) 지급·상환계좌 사전지정(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), 자금인출요청서 수신시 진위여부 확인(차주인감 사전등록 등) 등
  - (자금거래 통제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(지급대상자·수취계좌 명의 상이, 거액 송금 등)에 대해 별도 자금집행 절차 마련
  - (업무위탁 기준) 업무위탁 처리기준\* 마련 등 수탁사와의 거래 관련 관리체계 구축
    - \* 수탁사 임의선정 방지 등 업무위탁 계약의 방법·절차
- 4 이상징후 조기 탐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
  - (상시감시)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\* 탐지를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,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점검 실시
    - \* 보험료 자동이체 여부·연체, 보험금 지급청구 금액·빈도 등 참고하여 판단
  - (본인확인 절차) 소비자 제출서류의 위·변조 여부 검증절차\* 마련,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도입
    - \*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본인확인 시스템(ARS인증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사설인증서, 카드 본인확인서비스, 계좌 인증, 휴대폰 본인인증, 실명인증 등) 도입 등 포함
  - (내부고발)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 확대\*, 다양한 접수채 널 및 포상기준 마련
    - \* 내부고발자 범위에 보험설계사(전속·GA 설계사)를 포함

## ⇒ (要조치사항) 생·손보협회 자율규제 제정

## 2.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

◆ 과당경쟁 등이 유발하는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

## 【 현황 및 문제점】

- □ 최근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등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취약
  - 그간 시행된 「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」(이하 '모범규준') 내용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명시적 규제로 전환 필요

#### 【 개선방안 】

- □ 담보별 보장내용 및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실시
  - 상품위원회에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
  - 평가결과 보험사기 **취약요인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** 의무화
- □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 방지
  - **담보별 보장금액 한도** 설정시 **도덕적 위험** 등을 **감안**하고, 기존 체결된 계약(타사 계약 포함)의 보장금액 한도 합산
  - 보험사기 목적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해 중복·과다 보험가입방지 인수심사 절차\* 강화
    - \* 고위험 청약건(사망보험금 30억원↑, 계약건수 4건↑) 특별 인수심사 실시 등
- □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무리한 사고 조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원칙 규정
  - ※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

- **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공시**하고, **매분기 적정성을 검토**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병행
- (要**조치사항) 보험업감독규정**(제7-72조의1 신설) 및 **시행세칙\* 개정** \* 제5-19조의2 및 [별표14]표준사업방법서 개정, [별표36]상품위원회 운영기준 신설
- □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\*에 대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
- 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
  - 보험사기 의심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**금감원 보고** 서식\*을 시행세칙에 규정화
    - \* 보험 사기유형, 관련자 및 사건정보, 보험사 담당자 정보 등 포함
- 2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확대
  - 보험사기 혐의점 발굴을 위해 **미실시 진료비** 등 **거짓청구 적발정보\***\* 요양기관 현황 및 요양급여 심사·현지조사 자료(심평원)
  - 차량 도난신고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
- ❸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
-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**할증 보험료 환급**,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
  - (고지기한) 피해사실을 고지하는 기한(15영업일) 명시
  - ② (고지방법) 연락이 두절된 경우 행안부 주소확인 후 재고지 등
  - ③ (환급시기)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
  - ④ (보고의무) 환급실적 등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

## ☞ (要조치사항)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

## Ⅲ. 향후 추진계획

## 【개혁회의 발표과제 세부계획】

- □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
  - 생·손보협회 자율규제 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('24년말)
- □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
  - **보험업감독규정** 및 시행세칙 개정('25년上)
  -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('25년上)

## 【향후과제 추진방향】

- □ 이사회·경영진 간 상호견제 강화
  -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인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역할
    강화 및 독립성 제고방안 등 지배구조 개선
- □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
  -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경영·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 성과·보상체계 개선방안 검토
- □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
  - 책무구조도 도입의무 등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및 보험업 특성을
    반영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